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나3544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 종결 2020. 5. 27

판결선 고 2020. 6. 24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9가소1126773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신발 제조업체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광고물 제작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피고는 2017. 9. 11. 피고가 원고의 제품광고 영상물을 제작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마케팅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대금 385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영상물 제작기간은 최소 1주에서 최대 4주인데(제4조 제4항), 피고는 담당자 퇴사 등으로 위 기간까지 영상물 제작을 마치지 못했다.

이에 원고는 2017. 10. 23. 피고에게 2017. 10. 28.까지 영상물 제작을 완료하라고 요구하였고, 위 기한까지 피고가 작업을 마치지 못하자 2017. 10. 30.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뜻을 통보하였다.

라. 위 해제 통보 이후에도 원·피고는 영상물 제작을 위한 촬영 내용 및 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2018. 3.부터는 구체적 촬영 일정을 조율하였는데, 피고가 외국인모델을 섭외하지 못하여 촬영이 계속 지연되었다.

이에 원고는 여러 차례 촬영 진행을 독촉하다가 2018. 5. 15. 피고에게 환불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제작기한 내에 영상물 제작을 완료하지 못했고, 이에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했는데도 피고는 그 기간 내에 영상물 제작을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위 2017. 10. 30.자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일단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다만 그후로도 원·피고가 이 사건 계약이 여전히 존속함을 전제로 영상물 제작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였고 구체적 촬영 일정까지 조율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부활시키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후 피고는 모델 섭외를 하지 못하여 촬영을 진행하지 못했고, 이에 원고는 여러차례 촬영 진행을 독촉하다가 2018. 5. 15. 피고에게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의사표시로 보기에 충분하고, 그 효력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38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9. 12.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12. 21.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15%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당초 예정된 영상물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 작업을 요구하다가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강화석판사 정철민판사 마은혁